

『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7년 7월 3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7년 7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2007년 7월 18일

제126회 구미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신 영 근

나. 제안이유

-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증가 및 과소비,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등 사후관리 기능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
-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보조사업의 평가에 따른 근거마련 (안 제9조 제3항, 제4항)
- 보조사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 (안 제10조 내지 제20조)
 - 위원회 기능
 - 보조금의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
 -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 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운영
 -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
 - 위원은 공무원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민간단체, 시민단체,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
 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가능
 -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
 - 문화·예술분야 등 4개분과로 구성
 -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
- 경상북도 기획관실-3815(‘06.6.28)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 통보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수 영

- 본 개정 조례안은
 -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「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」의 사업비 정산은 지금까지는 기존 보조사업 완료시 시장이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해 왔으나,

-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평가위원회 설치기능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임.

○ 주요 개정내용은

-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는 등 평가근거를 마련하였고,
-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음
 - 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의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,
 -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, 대학교수,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음.
 -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①문화·예술 ②체육·봉사 ③복지·환경 ④경제·농업·기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
 - 기타 보조사업 평가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2가지 입니다.

1) 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.

- 안 제12조제1항 내용중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음
-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「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」 등에 의거 위원의 수는 위원의 성격상 관련단체 등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

- 위원의 수를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지침에 준하지 않고 30인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요구됨

2)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.

- 안 제12조제2항 내용중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, 대학교수, 민간전문가, 민간단체, 시민단체,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음
- 각종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운영 지침에 의거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물론 업무관련 다양한 계층의 경험자를 참여토록 되어있으나 본 개정안에는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음
-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보조사업평가 위원으로 참여할 경우, 운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위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